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도 해설

목 차

- I. 창업지원 기본방향 및 체계
- II. 창업지원 주요내용
- III. 창업의 범위
- IV. 창업절차 간소화
- V. 창업자금 지원
- VI. 세제지원
- VII. 창업관련 용역지원

〈이번호에 全載〉

I. 창업지원 기본방향 및 체계

기본방향

- 기술집약형 창업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의 획기적 지원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지원·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자 지원
- 창업절차의 대폭 간소화
-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창업지원기금 설치, 세제지원, 절차간소화, 상담, 정보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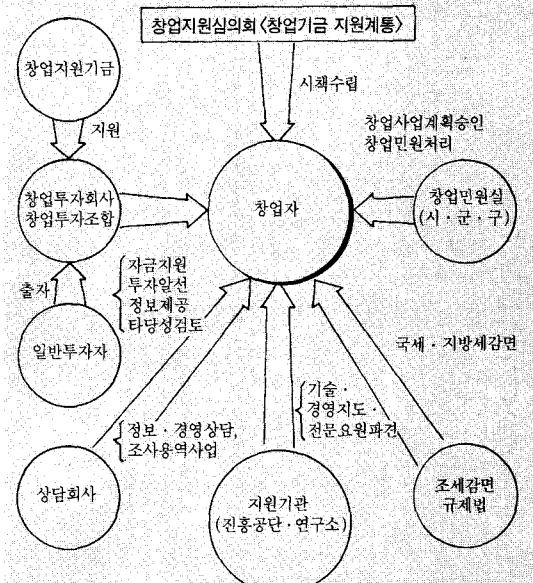
지원체계

II. 창업지원 주요내용

- '86. 5. 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절차간소화

-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사항의 제처리 (One-Stop Service 체제)
- 창업민원실 설치운영(275개)



자금지원

-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자금지원
 - 창업자에 대한 무담보 투자지원
 - V.C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중점지원
-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지원
 - 일반유류자금의 산업자금화 → 창업자투자지원
 - 일반창업자금 융자지원
 - 창업조성자금
 -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창업자금

세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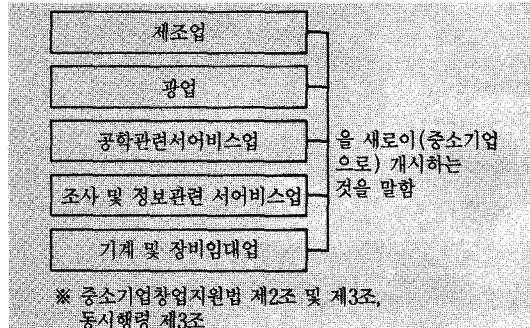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2~5년간 30~100% 감면)

기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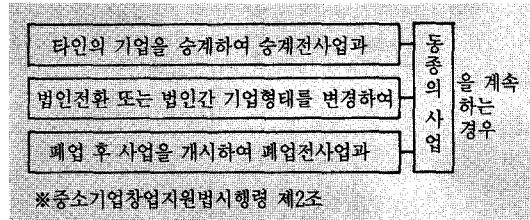
○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용역지원
- 사업타당성 검토 및 경영기술지도 등 용역 제공

III. 창업의 범위

1. 창업지원법상 창업



2.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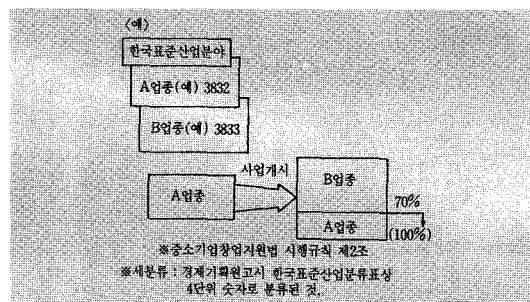
3. 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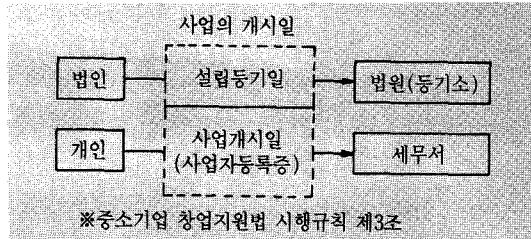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4.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당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



5. 사업의 개시일(창업일)



IV. 창업절차 간소화

1. 제도개요

○ 중소기업창업시 공장설치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절차 등을 일괄처리제도(one-stop-service)를 통해 간소화함으로써 창업촉진을 유도

2. 제도의 목적 및 관련근거법

○ 목적

- 과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된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 특히 종래에는 창업민원인이 창업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절타간소화로 이러한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대폭절감

○ 근거법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2조

3. 지원대상

○ 대상업종 및 창업자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2	광업
3	제조업
8,422	공학관련서비스업
843	조사 및 정보기관 서비스업
845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창업자

• 농어촌 지역 : 모든 창업자

※ 농어촌 지역의 범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90. 4. 7)

• 농어촌 이외 지역 및 수도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 주요 내용

-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승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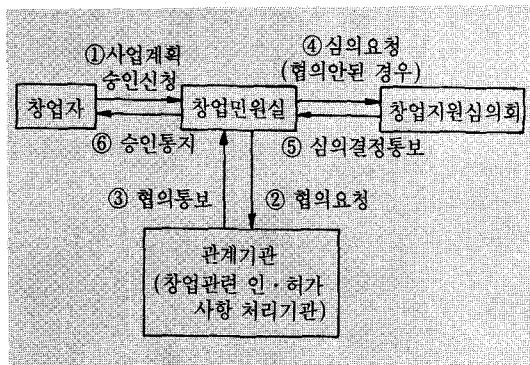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 관계기관 의견협의 → 사업계획승인 (시·군·구)

- 사업계획 승인효과 :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 절차 생략

※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91. 1. 13 시행)으로 의제처리 범위 확대 : 23개 법률 45개 인·허가 절차

4. 지원절차

○ 지원절차



○ 필요한 서류작성방법 : 창업민원실에 비치된 창업사업계획서를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작성 제출

○ 관련기관 및 담당부서

- 시·군·구청 창업민원실 : 서류접수, 소관사항, 결정, 타행정기관 소관사항을 협의(시·도 창업민원실 또는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 시·도 창업민원실 : 시·도지사 소관사항에 대한 협의결과 결정 및 통보(시·군·구 창업민원실에)

- 중앙행정기관 : 소관 사항에 대한 협의결과 결정 및 통보

5. 지원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 창업사업계획 승인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 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권고기간을 두어 사업계획변경 또는 공장건설착공 권고

○ 권고기간내에 불이행시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함.

V. 창업자금지원

1. 투자지원(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 성격

-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자에 대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의 자금지원 제도

- 주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인수 방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전문적인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조속한 성장을 지원

- 창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가 금지되고 이율발생시 지분에 따른 이윤분배

○ 관련근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 13조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업무운용준칙, 창업투자조합 운영 및 관리요령 세칙

○ 지원대상 및 업종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설립 후 5년이내의 창업자(개인사업가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인)

- 업종 : 제조업, 광업, 공학관련 서비스업, 조사정보관련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임대업.

○ 지원방식 및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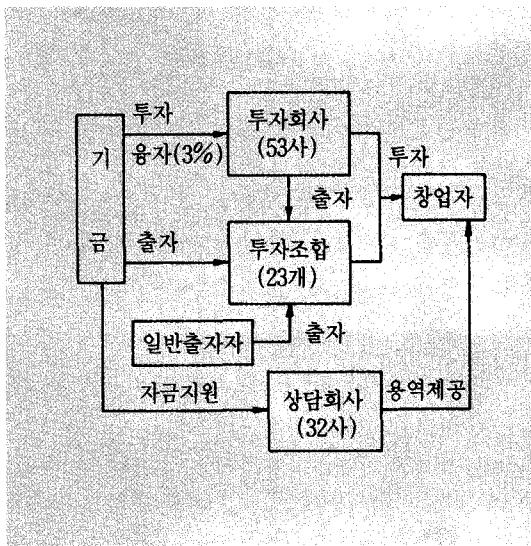
- 주식인수 : 의결권주의 50%이내(상공부장관 승인시 50%초과 가능)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주식인수 총액의 50%이내

- 약정투자 : 투자회사가 창업자간 약정에 의해 투자조건을 결정

※ 주식인수업체에 대한 단기자금대여 행

지원 가능



2. 융자지원(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중 창업 조성자금)

○ 성격

- 창업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자금융자 등 지원

○ 관련근거

- 중소기업진흥법 제11조
- 중소기업 육성관련 통합고시 제4장
- 창업조성 지원사업 추진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

- 설립 후 1년 이내의 중소기업 창업자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다음 업종 또는 분야를 영위하는 자
 - 우선육성업종, 지정계열화품목, 취약기술 업종

- 수입대체 또는 수출유망품목
- 신기술 · 신제품분야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자.
-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자.
-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 품목의 사업을 하는 자.

- 특허와 실용신안을 기업화 하는 자.
- 상공부 장관이 기술개발 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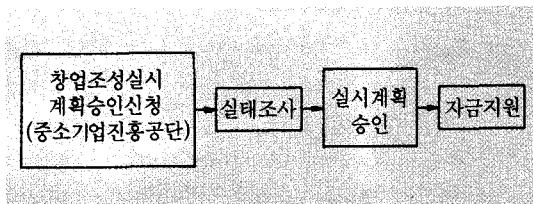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자금지원

구 분	지 원 액	지 원 조 건
시설자금	3억원이내(소요자금 의 90% 이내)	8년(3년거치) 연리 9%)
운전자금	1억원이내(소요자금 의 70% 이내)	3년(1년거치) 연리 9%)

- 시설대여, 경영 및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 지원절차



3. 보증지원

기술창업보증

○ 성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
- 창업기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별도 간이심사제도 운용

- 근거 : 신용보증 기금법

○ 지원대상 : 설립 후 1년 이내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아래의 기술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
-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인정한 신기술보유자

- 국 · 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 기술사, 기사 1 · 2급, 기능사 1급 해당자
-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 중소기업 창업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자

○ 지원요건

– 운전자금 : 사업자 등록증 소지, 제조업 영위기업으로 설립 후 1년이내, 기술요건 충족 또는 신기술 사업계획승인, 경력 및 생산설비 보유

– 시설자금 : 사업장 부지확보, 사업자 및 당해시설이 주담보 후취되어 보증우선해지, 후취 담보 평가예상액 감안 담보대출 비용이 100% 미만

○ 보증한도

구 분	보 증 액 (동일업체당)	보 증 력
운전자금	1억원이내	연 1%
시설자금	3억원이내	연 1%

기술신용보증

○ 성 격 :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 균 거 :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정책시책부문 보증)

정부의 시책에 의거, 지원되는 아래의 각종 자금 및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시책부문 보증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동 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심사기준 저축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증 지원

– 당기금선정 우량기술기업
–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기업(타기관 선정포함)

–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에 의거, 지원되는 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자금

– 국민투자기본법에 의거, 지원되는 국민투자기금 중 기술개발자금

– 공업발전법에 의거, 지원되는 공업발전기금(기계공업진흥회 등 사업자단체 배정자금)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원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소기업 진흥공단 배정자금 및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의 자체지원자금)

– 농어촌소득원 개발추진법에 의거, 지원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금(에너지 관리공단 배정자금)

–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에 의거, 지원되는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등

○ 보증한도 : 15억원

○ 지원절차 : 기술창업 보증절차 참조

4.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 지원대상

– 기업의 연구개발(자체 및 위탁)을 위한 사업

– 연구개발성과, 발명기술 및 도입기술의 최초 기업화를 위한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조화, 개량사업

– 신개발 제품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설을 위한 사업

– 제조공정개선 및 기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 고도의 기술과 장래성이 있는 기술집약형 사업

○ 지원내용

– 신용 및 일반융자

• 융자한도 : 전당(동일인당) 5억원(150만불)이내, (소요자금의 80~100%)

• 융자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8~10년이내 상환, 연리 12~12.5%

– 조건부융자

원리금 상환에 대신하여 사업경영결과 발생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실시료를 정수하고 사업실패시 최소상환금만 회수

– 투자

• 투자방식 : 주식투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인수

• 투자한도 : 발생주식의 50%이내, 5억원이내

VII. 세제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대상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소득세·법인세 : 창업일이 속하는 년도 및 그 다음년도로부터 3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조감법 제15조)

※ 다만 수도권지역은 창업 후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감면

- 등록세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2년간 50% 감면(조감법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조감법 제85조의 2)

2.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금융 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10% 분리 과세(조감법 제5조)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 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10% 분리 과세(조감법 제5조)

○ 의제배당소득 비과세(조감법 제6조 제3항)

○ 주식양도 차익의 익금불산입(조감법 제18조의 2)

○ 투용자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투용자액의 50%(조감법 제54조)

○ 창업투자회사가 대도시에서 법인등록시 등록세 5배증과규정의 배제(내무부 고시 제14호 : 86. 9. 27)

○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출자금을 기술 개발 준비금으로 인정, 손금에 산입(조감법 제16조)

Ⅶ. 창업관련 용역지원

1. 제도개요

○ 전문용역 기관인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해 창업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창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창업을 유도

— 용역비의 50%까지 창업지원기금에서 보조

○ 경영능력이 부족한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용역제공으로 건실한 성장을 지원

2. 관련근거법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2조(중소기업 상담회사)

○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3. 지원내용

○ 지원기관 : 중소기업 상담회사

— 일정요건을 갖추어 상공부에 등록한 경영 컨설팅전문회사

— 상담회사 업무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 경영 · 기술지도
- 창업자금 및 사업알선
- 공장입지 및 세제지원 상담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상담회사로부터 사업성 검토 용역을 받아 창업한 자

— 중소기업 상담회사로부터 사후관리용역(경영 · 기술지도, 사업확장에 따른 사업성 검토 등)을 제공받은, 설립 후 3년 이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지원액 : 용역비의 50%까지 창업지원금에서 보조(500만원 이내) <♣>

案

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

內

本會는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를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 (KOEX)別館 2층 發明獎勵館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活用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 551-5571~2